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4. 10. 16 선고 2023가단4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B

피고C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지광

변론 종결2024. 8. 28.

판결 선고2024. 10. 16.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군위군 D 하천 22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2. 11.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되었고, 이후 2011. 2. 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2008. 7. 25. E를 상대로 이 법원(2008가단1837)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7. 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E는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피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피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0.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년 이상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였는바, 통행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년 중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발생한 부당이득금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거를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하나, 법원의 증거 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손해액에 관하여 나름의 주장을 펴고 그에 관하여만 증거를 다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원이 굳이 스스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손해액 산정 기준이나 방법을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제시할 필요까지는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861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통행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의 부당이득액 입증 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선행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계쟁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통행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원고는 이

법원의 부당이득액 증명에 관한 수차례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감정신청 등 적절한 증거신청을 하지 않았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액의 발생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전부 내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여 36,000,000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공병훈

별지